
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재관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11052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5. 6. 24.

발의자 : 이재관 · 정진욱 · 박지원

문진석 · 김문수 · 박희승

정일영 · 위성곤 · 박선원

이병진 · 김윤덕 · 황명선

황정아 · 강준현 · 양부남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일반재산의 관리 · 처분에 관한 사무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, 중앙관서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정부출자기업체, 금융기관,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일반재산의 관리 ·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국유지를 위탁개발 할 수 있으며,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한하여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하고 있음.

그러나 미활용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경험이 풍부한 지방공사에게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지방공사를 일반재산의 관리 · 처분에 관한 사무를 수탁할 수

있는 대상기관에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42조제1항).
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제1항 중 “투자매매업자 · 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”를 “투자매매업자 · 투자중개업자,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